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신종 MMF(S-52 호)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	(생략) 1.~7. (생략) 8. 전자단기사채등	(현행과 동일) 1.~7. (현행과 동일) 8. 단기사채 등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 (생략) 1. (생략)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생략)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② (생략) 1.~4. (생략) 가.~다. (생략) 라. 전자단기사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나. (현행과 동일)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②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단기사채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생략)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td></tr>
<tr><td></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전자단기사채 등</td><td>-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td></tr></table>
나. 투자제한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 “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td></tr></table></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단기사채 등</td><td>-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td></tr></table>
나. 투자제한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동일종목투자</td><td>-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단,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의 경우 “5%”는 “1%”로,</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td><td>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나. (생략)</td></tr>
<tr><td>기타 투자 제한</td><td>-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td></tr>
<tr><td>투자 한도</td><td>① (생략)
1.~4. (생략)
가.~다. (생략)
라. 전자단기사채</td></tr>
</table>
</td>
<td>
<table>
<tr><td></td><td>“2%”는 “0.5%”로 적용하고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음(나목의 어음은 제외한다)의 경우 “5%”는 “3%”로, “2%”는 “1%”로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현행과 동일)</td></tr>
<tr><td>기타 투자 제한</td><td>-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동일)</td></tr>
<tr><td>투자 한도</td><td>①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단기사채</td></tr>
</table>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td>
<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td>
</tr>
</table>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4%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0.07%임에 따라 6 등급 중 6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42%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65%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30%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38%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63%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3%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후 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 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 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 '13.1.1~'13.2.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1]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등급 (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4 등급 (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5→4)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 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변경 전 1]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8.26%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후 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 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 UBS 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1]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인 Best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6.76%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1.84%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파워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8%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56%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전 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변경 후 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경 전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 만원 한도까지 12%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88%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1.30%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투자비용**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	(생략)	(업데이트)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26%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0.97% 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가치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신탁계약서의 투자대상취득한도의 세부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신탁계약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 2 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 2 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 3 조제 4 항제 1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P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 3 조제 4 항제 2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수준으로 한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 (생략) <신설>	①~③ (현행과 동일)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상금액: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 단,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지급시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신탁계약서의 투자대상취득한도의 세부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그레이터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운용전문인력** (생략)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경력, 운용현황, 수익률 업데이트)

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80%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21.07%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추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별첨 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 1]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과세이연: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1 년 04 월 07 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생략)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생략)	**투자비용**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4 월 07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	(생략)	(업데이트)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